성주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

1. 발의자 : 이수경, 김영래, 백철현, 이성재, 김명석, 배명호, 이화숙 의원 공동 발의

2. 개정이유

❍ 「성주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 조례」의 관련법령인 「야생동·식물보호법」과 하위법령인 시행령, 시행규칙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,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시행근거를 마련하고

❍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정비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피해보상의 요건(안 제3조)
- 피해예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대한 근거 신설(안 제4조)
- 보상금 지급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신설(안 제6조)
- 인명피해 보상에 대한 근거 및 세부규정 신설(안제7조~제9조)
- 농작물 피해 보상금 산정 규정(안 제11조)
- 야생동물 자율구제와 대리포획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신설(안 제11조)
- 피해보상 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13조~제19조)
- 야생동물 자율구제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 신설(안 제20조)
-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보상을 받은 자에 대한 환수 규정 (안 제21조)

4. 관련법령

❍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12조제2항

5. 검토보고

❍ 본 조례안은 현행「성주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 조례」의 관련법령인「야생동·식물보호법」이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고 그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,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,

❍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하는 인명피해와 농작물피해 등에 대한 보상근거 규정을 정비 보완하는 사안으로, 특히 산간오지 지역의 농민들이 힘들게 가꾸어 놓은 농작물을 유해야생동물로부터 그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하여,

❍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므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